

## 환등필름이 분실된 경우

손해배상으로 그것의 재생산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München I 지방법원 1991.10.25.자 판결

-10 O 4355 / 90 사건-

###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

### 판결요지

환등필름이 분실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는 그 재생산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 사실개요

원고는 피고가 환등기의 필름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는 신문기자 겸 사진사다. 1989. 8. 2.자의 팩시밀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가지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그후 피고는 1989. 9. 26.자의 서신에 의하여 「Gerhards Marionetten in Shwäbisch Hall」에 관하여 원고가 리포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리포트 이외에도 1989.10. 3. 그의 자료로 20 장의 환등필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환등 필름들은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가 위 환등필름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위 필름들이 모두 분실되어졌음이 판명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의 배상으로서 5 천 마르크를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각의 환등필름은 약 1 천 마르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미 지급된 5 천 마르크 이외에도 따로 1 만 5 천 마르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결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원칙에 의하거나 또는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의규정에 의하더라도 1 만 5 천 마르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5 천 마르크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 금액은 이미 지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인인 R 의 진술에 의하면 위 분실된 필름의 재생은 어느 때든지 항상 가능한 것이고, 그 비용은 3 천 9 백 마르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 범위에 있어서는 위 감정인의 감정은 완전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위 꼭두각시(Marionette)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환등필름을 다시 만드는 것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이 가능하다. 또한 원고는 독일민법

제 254 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 사진들을 다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사진들은 원고가 장차 수입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위 사진들은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목적물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물의 가치는 그와 같은 종류의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물건을 다시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가치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평생동안 수입을 상실하는 경우의 가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물건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고로부터 그의 사진기를 강취하였다고 할 경우에 원고는 그 사진기와 동일한 가치에 있는 사진기의 시가에 따른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위 경우 원고는 가해자로부터 그가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그 사진기로 인하여 벌어들일 수입의 상실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위 필름이 다시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예술 작품이라거나, 원고의 위 사진이 바로 거래시장에 있어서 다른 직업사진 작가들이 제작한 사진들의 가격을 훨씬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위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다.

위 필름을 다시 제작함에 있어서는 위 필름이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위 분실된 필름과 전혀 동일하게 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즉 위 꼭두각시 인형의 배치 등이 원래의 모습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를 시장에 내어놓음에 있어서는 위 분실된 필름과 거의 마찬가지의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감정서가 위 재산을 위한 내용이 3 천 9 백 마르크에 이를 것이라고 한 점에 관하여는 당 재판부는 이에 공감하지 아니한다. 위 감정인 스스로도 그의 1990. 11. 20.자 감정서에서 위 가격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밖에 위와 유사한 테마로서 1 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필름이 제작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감정인은 위 꼭두각시 인형이 얼마나 자주 촬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목록을 제출하고 있지만, 위 인형들이 잡지나 기타 유사한 관심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얼마나 자주 유상으로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 역시 당 재판부로서는 공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 환등필름의 가격에 대한 그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임은 감정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